

수업지침

제정 2012. 2. 9
 개정 2012. 12. 1
 개정 2014. 9. 1
 개정 2015. 3. 1
 개정 2016. 3. 1
 개정 2016.10.31

1. 관련근거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칙 및 시행세칙, 교육과정편성지침, 강사위촉규정, 년도별 강사료 확정 결재문, 교원별 시수 확정 결재문

2. 수업준비 절차

가. 수업은 학사일정 및 관련 규정, 교학본부의 수업지침에 의거 준비한다.

나. 수업준비절차

- 교과과정 확정
- 교과과정 등록(종합정보시스템)
- 과목개설승인
- 대학전체 교양과목 시간표 및 전공별 시간표 확정
- 교과목 분반 및 담당교수 배정(외래교수 위촉 절차에 의거)
- 강사 전산 등록
- 시간표 확인 및 강의실 배정, 조정
- 학년별, 반별 시간표 전산입력
- 강의계획서 입력
- 시간표 공지
- 수강신청(학생)

3. 시간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교수별 주당 기본시수, 최대수업시수, 기본수업일수를 지켜 시간표 편성

교원구분	기본시수	최대수업시수	기본수업일수	비고
보직 교수별	교수별 주당 기본시수, 기본일수에 따라 상이함			- 기본시수를 초과하여 수업을 할 경우 시간당 10,000원씩 초과강의료 지급 - 단, 기본수업일수는 원장의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음
전임교수	12	18	4	
겸임교수	9	14	-	
강사	-	14	-	

- 나. 행정보직교수 교무위원회의 동시간대 강의편성 제외
- 다. 작성 후 결재 완료된 강의시간표는 변경이 불가능 하므로 신중히 시간표 편성
- 라. 중식 시간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 마. 전임교수의 경우, 1일 6시간 이내로 편성
- 바. 오전, 오후 시간대에 반드시 전임교수 1인 이상이 전공에 상주할 수 있도록 편성
- 사. 4시간 이상 연장하지 않도록 편성
- 아. 버스배차와 식당 등의 문제로 요일별 시간표를 고르게 안배
- 자. 수업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함
- 차. 유아교육과의 학기 중 교육실습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교과목의 결강은 수업시간표 편성 시 보강 내용을 포함하여 학점당 이수시간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함 (개정 2016.03.01.)

4. 강의계획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 가. 강의계획서는 종합정보시스템의 온라인으로 담당 교수가 기한 내에 직접 입력
- 나. 교과목명은 교육과정표상의 정확한 과목명으로 기재(기표기호를 정확히 한다)
- 다. 강의계획서는 15주 전 과정의 강의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주차별로 정리되어 있어야 함 (블럭식 수업은 실시하는 주수의 강의내용을 주차별로 정리되어 있어야 함)
- 라. 수강신청 시 학생들이 강의계획서 내용을 확인 후 수강신청을 하게 되므로 반드시 강의계획서를 기간 내 입력하여야 하며, 교수요목에 맞도록 충실히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

5. 수업운영 관련 유의사항 (개정 2016.03.01.)

- 가. 교육과정 상의 강의 신규개설과목 명명기준(교육과정표와 전산입력 모두 해당)
 - ① 과목명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음
 - ② 과목명의 한글표기 시에는 숫자를 로마자로 표기, 영문표기 시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 ③ 한글표기 과목명의 로마자 표기 시 반드시 특수문자 로마자로 표기(영문 I 표기 금지)
- 나. 분반기준: NCS기반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개 반당 수업인원을 30명 이하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초과 할 수 있음
- 다. 폐강기준 : 수강인원 15명 미만. 단 15인 미만이라도 스쿨원장의 허가를 받아 폐강처리하지 않을 수 있음
- 라. 교과목 수강인원에 따른 시수 적용

구분(인원)	시수	비 고
40~50명까지	1.0배	수강인원 40명 미만일 경우 1.0배 적용
51~90명까지	1.5배	
91명 이상	2.0배	

- 마. 각 스쿨별로 배정된 강사료를 고려하여 수업 배정

바.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 실시 가능. 집중수업과목은 사전 수강신청자들에게 강의계획서를 통해 집중수업임을 안내하여 수업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사. 스쿨의 사정 혹은 교수자의 사정으로 교육과정표 상의 교과목의 운영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개설 후 폐강절차를 진행(신설 2016.10.31.)

6. 강사 위촉에 관한 사항

가. 3년 이상 연속 출강자는 출강을 제한한다. 다만 교과목 운영 특성상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별첨 1 작성)

나. 추천서 작성 시 신규, 계속에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신규: 최초 출강하는 강사
- 계속: 직전학기 또는 그 이전에 출강한 경력이 있는 강사

다. 강사관련 서류(비전임(겸임,강사)교수 추천대장, 이력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는 『비전임(겸임,강사)교수 추천대장』 만 교학본부 인사담당에게 제출하고 다른 서류들은 전산입력 후 스쿨에서 보관

라. 강사료

내 용	등급별 금액	비 고
A등급 : 직전학기 수업평가 4.8이상	A: 35,000원	
B등급 : 직전학기 수업평가 4.2이상	B: 30,000원	
C등급 : 직전학기 수업평가 4.0이상, 신규 출강자	C: 25,000원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사위촉규정에 의한다.

별첨1) 수업관련 예외사항 사유서

20__학년도 학기 수업관련 예외사항 사유서

학과 및 전공		직급	
담당교수		시수	
예외사항 선택	1. 전임 강의 기본시수 및 일수 미달 ()		
	2. 외래·겸임 자격미달자 및 출강제한 ()		
	3. 폐강 대상과목 예외(수강인원 15명 미만) ()		
	4. 3년 이상 연속출강자 출강제한 예외인정 (○)		
	5. 기타 ()		
사유	<p>000 교수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외래교수로 000000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3년 이상 연속출강자에 대한 출강제한 조항에 예외적 사례로 인정해주시길 요청합니다.</p>		

201

작성자: (인)

청강문화산업대학교 000스쿨 원장 귀하